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01
----------	-------

발의연월일 : 2026. 4. 24.

발 의 자 : 김기웅 · 박성훈 · 정동만  
임종득 · 백종현 · 이종배  
이인선 · 김기현 · 서명옥  
정희용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에 취약한 노인 계층의 건강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들이 장시간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기준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신설).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1조의3(노인복지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① 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 목욕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운영자는 노인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31조의3(노인복지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① 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 목욕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u></p> <p><u>· 운영자는 노인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u></p> <p><u>· 관리하여야 한다.</u></p> <p><u>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